

보도 일시	2022. 2. 9.(수) 11:00 2. 10.(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2. 9.(수) 09:00
담당 부서	농업생명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지현 (044-201-2371)
		담당자	사무관 정희선 (044-201-2372)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 2월 11일부터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하여, 2021년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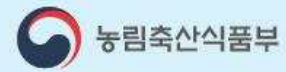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 라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 붙임 1. 목줄 2미터 관련 홍보 포스터
2. 목줄 2미터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2년 2월 11일 시행



※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
뭐가 달라지나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 되었습니다.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기존과 동일)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개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신설)



2미터가 넘는 자동 리드줄 또는 3미터/5미터 길이의 리드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목줄 길이를 지켜야 하나요?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주세요.
안전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목줄 길이가 2미터를 조금 넘으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의무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며,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이란 무엇인가요?

A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 다중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정의를 따름

Q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현관문에서부터 오피스텔 건물을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아야 하나요?

A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내부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과 상관 없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Q 중형견,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안고 있거나, 안아 이동하기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기 힘든 경우,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하네스를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공용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타인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험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면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2022년 2월 11일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모두를 위한 배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참여해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